

【 5 】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0. 4. 7

제출자 양주군수

□ 개정이유

하수오염저감기술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99. 2. 8. 법률 제586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배수설비준공검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요율표를 변경하며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군수는 동 설치자의 신고사항과 설치구조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도록 함(안 제4조의2).
- 나.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요율표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 다. 하수배출량의 조사에 있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안 제14조제4항).
- 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에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토록 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7조제2항·제4호).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1항중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중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제7조제1항제1호중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제12조제1항 단서중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제14조제4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중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제17조제4항중 “조례에서”를 “규칙으로”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별표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익월분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제4조의2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하수도사용요율표(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업 종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율	
		사용구분(m'/일)	m'당 단가(원)
가 정 용		1 - 10	90
		11 - 20	100
		21 - 30	120
		31 - 40	140
		41 - 50	160
		51 이상	200
업 무 용		1 - 20	140
		21 - 50	160
		51 - 100	180
		101 - 300	210
		301 이상	240
영 업 용		1 - 30	180
		31 - 50	210
		51 - 100	250
		101 - 500	290
		501 이상	330
특 탕 용	1종	1 - 500	130
		501 - 700	150
		701 - 1,000	170
		1,001 이상	190
2종		1 - 200	200
		201 - 300	230
		301 - 500	270
		501 이상	320
산 업 용		1m'당	140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지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군 면 리 번지(동, 반)				
	관종	PVC관, PE관, 흠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환경부 고시 제92-61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검사일자 (. . .)	보완사항	2차 검사 검사일자 (. . .)	비고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 (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계절 (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O, X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준공검사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도면					수수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1 ~ 4 (생략)</p> <p>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u>하수처리시설</u>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p> <p>(신 설)</p>	<p>제2조(용어의 정의) 1 ~ 4 (현행과 같음)</p> <p>5. ----- ----- ----- <u>하수종말처리시설</u> ----- -----</p> <p><u>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u> <u>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을 사용승인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u> <u>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6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하수처리시설</u>,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생략) 	<p>제6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p> <p>-----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하수종말처리시설</u> ----- ----- ----- 2.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p>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분배) ①군수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p> <p>1. <u>하수처리시설</u>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 8.(생략)</p>	<p>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분배) ①-----</p> <p>-----</p> <p>1. <u>하수종말처리시설</u>-----</p> <p>2. - 8.(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량)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u>하수처리시설</u>이 미설치된 군수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p> <p>② - ③(생략)</p>	<p>제12조(사용량) ①-----</p> <p>-----</p> <p>-----</p> <p>-----<u>하수종말처리시설</u>-----</p> <p>-----</p> <p>-----</p> <p>② - ③(생략)</p>
<p>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생략)</p> <p>④제1항의 규정에 이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u>(단서신설)</u></p>	<p>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p> <p>-----</p> <p>-----</p> <p>-----</p> <p>-----<u>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u></p>
<p>제17조(원인자 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u>하수처리시설</u>)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u>하수처리시설</u>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p> <p>② 1 ~ 3 (생략)</p>	<p>제17조(원인자 부담금) ①-----</p> <p>-----</p> <p>-----<u>하수종말처리시설</u>-----</p> <p>-----</p> <p>-----</p> <p>-----<u>하수종말처리시설</u>-----</p> <p>-----</p> <p>-----</p> <p>② 1 ~ 3 (현행과 같음)</p>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p><u>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하여야 함.</u></p> <p>가. 오수를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p> <p>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p> <p>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조례에서 정한다.</p>	<p><u>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u></p> <p>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p> <p>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p> <p>④----- ----- ----- -----규칙으로-----</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제12조제3항 관련)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업 종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을		구 분 업 종	기본요금 (원)	사용구분(m ³ /월)		
가정용		사용구분(m ³ /월)	m ³ 당 단가(원)	가정용		사용구분(m ³ /월)	m ³ 당 단가(원)	
		1~10	80			-----	90	
		11~20	90			-----	100	
		21~30	100			-----	120	
		31~40	120			-----	140	
		41~50	140			-----	160	
업무용		51이상	170			-----	200	
		1~20	130			-----	140	
		21~50	150			-----	160	
		51~100	170			-----	180	
		101~300	190			-----	210	
영업용		301이상	220			-----	240	
		1~30	170			-----	180	
		31~50	200			-----	210	
		51~100	230			-----	250	
		101~500	270			-----	290	
육량용	1종	501이상	310			-----	330	
		1~500	120			-----	130	
		501~700	140			-----	150	
		701~1,000	160			-----	170	
	2종	1,001이상	180			-----	190	
산업용		1~200	190			-----	200	
		201~300	220			-----	230	
		301~500	250			-----	270	
		501이상	300			-----	320	
산업용		1m ³ 당	130	1종		-----	140	
				2종		-----		
				산업용		-----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주 1. -----

2. -----

● 下水道法

소관부처 : 환경부

制定	1966 · 8 · 3	法律第1825號
改正	1973 · 2 · 8	법률 제2513호
	1979 · 12 · 28	法律第3213號(環境保全法)
	1982 · 12 · 31	法律第3647號
	1989 · 12 · 30	法律第4183號(政府組織法)
	1993 · 12 · 10	法律第4598號
	1994 · 8 · 3	法律第4782號
	1997 · 3 · 7	法律第5300號
	1997 · 12 ·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大法의施行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7 · 12 ·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 변경에 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9 · 2 · 8	法律第5864號(污水·糞尿 및 산물수거의 처리에 관한法律)
	1999 · 2 · 8	法律第5868號
	1999 · 2 · 8	法律第5893號(河川法)
	1999 · 2 · 8	法律第5911號(公有水面埋立法)
	1999 · 2 · 8	法律第5914號(公有水面管理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下水道를 改良하고 整備하기 위하여 그 設置 및 管理의 基準등을 정함으로써 都市 및 地域社會의 健全한 발전과 公衆衛生의 향상에 寄與하고 公共水域의 水質을 保全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2 · 12 · 31, 97 · 3 · 7>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2 · 12 · 31, 93 · 12 · 10, 94 · 8 · 3, 97 · 3 · 7>

1. “下水”라 함은 生活이나 事業에 起因하거나 附隨되는 污水 또는 雨水를 말한다.
2. “下水道”라 함은 下水(農作物의 耕作으로 因한 下水는 제외한다)를 排除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設置되는 下水管渠, 下水終末處理施設, 기타의 工作物과 施設의 總體를 말한다.
- 2의2. “公共下水道”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관리하는 下水道를 말한다.
- 2의3. “마을下水道”라 함은 農漁村地域의 水質污染을 初期段階에서 預防하기 위하여 自然마을單位로 設置하는 公共下水道를 말한다.
3. “排水區域”이라 함은 公共下水道에 의하여 下水를 排除할 수 있는 地域으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區域을 말한다.
4. “下水處理區域”이라 함은 下水를 下水終末處理施設에서 처리할 수 있는 地域으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區域을 말한다.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下水道法

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日出전 日沒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承認없이는 宅地 또는 담이나 올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改正 97·3·7>

④土地의 占有者는 정당한 事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사용을 拒否 또는 妨害하여서는 아니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關係人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4·8·3, 97·3·7>

第24條 (排水設備의 設置등) ①公共下水道의 사용이 開始된 때에는 排水區域内の 土地所有者(그 土地위에 建築物이 있을 때에는 그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公共施設物의 管理者는 그 排水區域의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流入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排水管・排水渠 기타의 排水施設(이하 “排水設備”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下水道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水質 또는 量의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排除하기 위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하는 者는 당해 下水의 水質 또는 量, 排水設備使用開始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된 下水의 水質과 量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4·8·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設置者가 그 設置工事を 완료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公共下水道管理廳의 竣工檢查를 받아야 한다. <新設 99·2·8 法586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排水設備의 改築・修繕 및 維持는 그 設置者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改築・修繕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3·12·10>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나 工場 기타의 事業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水質 또는 量의 下水를 公共下水道에 排除하기 위하여 設置되는 排水設備의 設置와 構造에 관하여는 建築法 기타의 法令의 規定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야 한다. <改正 94·8·3, 97·3·7>

第24條의2 (公共下水道 流入除外) 水質環境保全法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廢水를 排出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下水道管理廳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廢水를 公共下水道에 流入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2·8 法5868)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下水道法

②第1項의 规定에 의한 費用의 分擔에 관하여는 관계地方自治團體가 協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规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는 道知事(관계地方自治團體가 特別市・廣城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82·12·31, 94·8·3, 97·3·7>

④第3項의 规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裁定을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4·8·3, 97·3·7, 99·2·8 法5868>

⑤第3項 및 第4項의 规定에 의한 裁定이 있은 때에는 第2項의 规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30條 (市・郡에 대한 負擔命令) 道知事は 第7條第2項 또는 第28條의 规定에 의하여 道가 公共下水道에 관한 費用을 負擔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公共下水道로 인하여 利益을 받는 市 또는 郡에게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시킬 수 있다.

第31條 (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등의 費用負擔) 第10條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施行하는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 또는 維持나 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 또는 維持에 요하는 費用은 당해 工事 또는 維持로 인하여 받는 利益의 범위안에서 당해 公共下水道管理廳과 兼用工作物管理者가 協議하여 이를 分擔하여야 한다.

第32條 (原因者負擔金등) ①公共下水道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下水를 排除할 수 있는 排水設備을 設置함으로 인하여 公共下水道의 改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費用의 一部를 당해 排水設備을 設置한 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다.

②公共下水道管理廳은 他工事 또는 他行爲(公共下水道에 영향을 미치는 工事의 行爲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公共下水道에 관한 工事에 요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당해 他工事의 施行者 또는 他行爲者에게 負擔시키거나 당해 工事を 施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8>

③公共下水道管理廳은 公共下水道를 損壞시킬 行爲를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公共下水道의 修繕 또는 維持에 필요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行爲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다.

④公共下水道管理廳은 下水終末處理施設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下水處理區域안에서 施設 또는 建築物을 新築 또는 增築하는 者가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第9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汚水處理施設 또는 獨立淨化槽을 設置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施設을 設置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公共下水道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新設 94·8·3, 99·2·8 法5864>

第3章 建築

● 建築法

小管部處 : 건설교통부

全文改正 1991 · 5 · 31	法律第4381號
改正 1993 · 8 · 5	法律第4572號(國土利用管理法)
1994 · 12 · 22	法律第4816號(山林法)
1995 · 1 · 5	法律第4919號
1995 · 12 · 29	法律第5109號(韓國土地公註法)
1995 · 12 · 29	法律第5111號(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1995 · 12 · 29	法律第5116號(都市再開發法)
1995 · 12 · 30	法律第5139號
1996 · 12 · 30	법률 제5230호(건설산업 기본법)
1996 · 12 · 31	法律第5240號(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1997 · 8 · 28	法律第5386號(情報通信工業業法)
1997 · 8 · 28	法律第5395號(水道法)
1997 · 12 · 13	法律第5450號
1997 · 12 · 13	法律第5453號(行政節大法의 施行에 따른 公認會計士法 등의 整備에 관한法律)
1997 · 12 ·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 变경에 따른 建築法 등의 整備에 관한法律)
1999 · 1 · 21	法律第5656號(傳統建造物保存法廢止法律)
1999 · 2 · 8	法律第5827號(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1999 · 2 · 8	法律第5864號(污水 · 污尿 및 廉價廐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1999 · 2 · 8	法律第5868號(下水道法)
1999 · 2 · 8	法律第5895號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築物의 基地·構造 및 設備의 基準과 建築物의 用途등을 정하여 建築物의 安全·機能 및 美觀을 향상시킴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 · 1 · 5,

96 · 12 · 30, 97 · 12 · 13 法5454, 99 · 2 · 8 法5895>

1. “基地”라 함은 地籍法에 의하여 各 篙地로 區劃된 土地를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2이상의 篙地를 하나의 基地로 하거나 1이상의 篙地의 일부를 하나의 基地로 할 수 있다.
2. “建築物”이라 함은 土地에 定着하는 工作物中 지붕과 기둥 또는 牆이 있는 것과 이에 附隨되는 施設物, 地下 또는 高架의 工作物에 設置하는 事務所 · 公演場 · 店鋪 · 車庫 · 倉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의2. “建築物의 用途”라 함은 建築物의 종류를 유사한 構造 · 利用目的 및 形態別로 둑어 分類한 것을 말한다.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建築法

術의인 사항이 표시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設計圖書와 第9條의 2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각 契約書의 簿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新設 95·1·5, 97·12·13 法5454>

第17條 刪除 <95·1·5>

第18條 (建築物의 사용승인) ①建築主는 第8條·第9條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

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를 완료(하나의 建築地에 2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棟別工事を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建築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가 작성한 監理完了報告書를 첨부(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許可權者에게 사용승인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②許可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申請書를 접수한 날부터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建築主에게 使用承認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許可權者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위한 檢查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12·13 法5454, 99·2·8 法5895>

③建築主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建築物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許可權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臨時로 使用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9·2·8 法5895>

④建築主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에 의한 竣工検査를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14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5, 97·8·28 法5386, 99·2·8 法5827·法5864·法5868>

1. 汚水·黃尿 및 廉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獨淨化槽의 竣工検査

2. 刪除 <99·2·8 法5895>

3. 地籍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地籍公簿變動事項의 登錄申請

4. 下水道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竣工検査

⑤許可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2·8 法5895>

⑥市·道知事は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정 1971·6·15 건설부령 제107호
 개정 1983·7·28 건설부령 제361호
 1995·2·7 환경부령 제5호
 1997·9·19 환경부령 제31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하수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7·28>

제 2 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 ① 영 제 5 조제 1 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하수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말한다.

② 영 제 5 조제 2 항제 8 호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말한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평면도·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2.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서류
(전문개정 97·9·19)

제 2 조의2 (하수도자문위원회의 구성등) ① 영 제 5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하수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하수도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7·9·19)

제 3 조 (관리의 범위) ① 법 제 7 조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과 그 자치구의 구청장과의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다.
2. 공공하수도중 하수관거 기타 공작물의 관리의 범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하수도법시행규칙

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일전에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증표) 법 제23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3·7·28>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등) 법 제24조제 2 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3·7·28, 95·2·7>

제12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등) ①법 제24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그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83·7·28, 95·2·7>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어야 한다.
2. 배수설비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경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경질염화비닐·도기 기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로 되어야 하고,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5. 분류식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배수설비는 제 1 항의 기준외에 별표의 세부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2·7>

제12조의2 (권한위임사항의 처리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 제22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처리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2·7>

1. 삭제 <97·9·19>
2. 공사의 중지등 조치 및 시설개선명령상황(별지 제14호서식)
(본조신설 83·7·28)

제13조 (제결신청서) 영 제2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제결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3·7·28>

제14조 (의견진술의 절차)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水質環境保全法

소관부처 : 환경부

制定	1990 · 8 · 1	法律第4260號
改正	1991 · 5 · 31	法律第4388號
	1992 · 12 · 8	法律第4536號
	1993 · 12 · 27	法律第4653號
	1994 · 1 · 5	法律第4714號(環境改善特別會計法)
	1994 · 8 · 3	法律第4782號(下水道法)
	1995 · 8 · 4	法律第4970號(廢棄物管理法)
	1995 · 12 · 29	法律第5095號
	1997 · 8 · 28	法律第5389號
	1997 · 8 · 28	法律第5390號(湖沼水質管理法)
	1997 · 12 ·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7 · 12 ·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 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9 · 2 · 8	法律第5870號
	1999 · 2 · 8	法律第5893號(河川法)
	1999 · 2 · 8	法律第5914號(公有水面管理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水質污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上의 危害를 預防하고 河川 · 湖沼 등 公共水域의 水質을 적정하게 管理 · 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 · 12 · 29>

1. “廢水”라 함은 물에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水質污染物質이 混入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水質污染物質”이라 함은 水質污染의 要因이 되는 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特定水質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財產이나 動 · 植物의 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水質污染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公共水域”이라 함은 河川 · 湖沼 · 港灣 · 沿岸海域 기타 公公用에 사용되는 水域과 이에 接續하여 公公用에 사용되는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水路를 말한다.
5. “廢水排出施設”이라 함은 水質污染物質을 公共水域에 排出하는 施設物 · 機械 · 器具 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海洋污染防治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 및 海洋施設을 제외한다.

第39編・環境 第2章 環境保全 水質環境保全法

②削除 <97·8·28 法5389>

③事業者は 共同防止施設을 設置·운영할 때에는 당해 施設의 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 代表者를 두어야 한다. <新設 93·12·27>

④共同防止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2·12·8, 95·12·29>

第14條 (排出施設등의稼動開始申告) ①事業者は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를 완료하거나 排出施設의 变경(變更申告를 하고 变경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变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環境部長官에게 稼動開始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稼動開始申告를 한 事業者は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排出許容基準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防止施設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는 第16條·第17條 및 第19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70>

③削除 <99·2·8 法5870>

④削除 <97·8·28 法5389>

⑤削除 <99·2·8 法5870>

(全文改正 95·12·29)

第15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①事業者(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號의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12·27, 95·12·29, 97·8·28 法5389>

1.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防止施設에 流入하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防止施設에 流入하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行위
2. 防止施設에 流入되는 汚染物質을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行위
3.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에 工程중에서 排出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工程중에서 排出되는 汚染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排出許容基準이

第39編 環境 第2章 環境保全 水質環境保全法

초과되는 汚染物質이 防止施設의 最終放流口를 통과하기 전에 汚染度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排出하는 행위. 다만, 環境部長官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質污染防止工法상 稀釋하여야만 汚染物質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정당한 사유없이 正常的으로稼動하지 아니하여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②事業者는 操業을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에 관한 狀況을 사실대로 記錄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事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量을 測定할 수 있는 器機를 부착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 5870>

④내지 ⑥削除 <99·2·8 法5870>

第16條 (改善命令) ①環境部長官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후 操業중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事業者(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汚染物質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②削除 <95·12·29>

第17條 (操業停止命令) ①環境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者が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期間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查結果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 95·12·29>

②削除 <99·2·8 法5870>

第18條 削除 <97·8·28 法5389>

‘수돗물 아껴쓰기란 생활화 합시다’

경 기 도

우) 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예산로3가 1 / 전화(033)249-3454 / FAX(033)249-3459
상하수관리과 과장 정지운 담당 김영호

010-02

문서번호 상하 67712-1944
시행일자 1999. 8. 1 (5년)
(경 유)
반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하수도담당과장

선결	소장	기사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999. 8. 1.		체결
	번호	2105	
	처리과		공
			임
	담당자		

제 목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내용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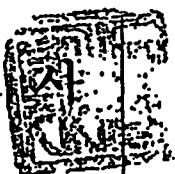
- 환경부 하수 67712-457('99. 7. 27)호의 이첩입니다.
- '99. 8. 9. 하수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을 복임과 같이 개정 통보하니 귀시군의 설정에 알맞게 하수도사용조례를 제·개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취지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이중부자를 방지하여 하수관련 비용의 효율적 사용과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함인바, 환경부 감사실에서 대구광역시 및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감사 지적내용 및 개선사항을 복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개정내용 1부.

나. 원인자부담금 관련 감사 지적내용 및 개선사항 1부. 끝.

경 기 도 지

전결 원 경 국 장 정 병 일



받는곳 : 레(01~31)

환경부 훈령 제434호('99. 7. 26.)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 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 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7조 제2항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보합액과 해당 시·군·구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부 칙

이 기준은 1999. 8. 9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현 행	기 정 (안)	비 고
<u><신설></u>	<p>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전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을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등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규정
<u>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u>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p>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③ (현행과 동일) ④----- ----- ----- ----- -----.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봄 수 있다.</p>	폐수측정량 을 하수 배출량으로 인정

현 행	기 정 (안)	비 고
<p>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생략) ② 1~3 (생략)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u>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u>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u>전액</u>과 해당 시·군·구의 해당 건축물의 <u>오수정화시설</u> 또는 <u>정화조</u>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p> <p>다만, <u>면제한 배수설비</u>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p>	<p>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현행과 같음) ② 1~3 (현행과 같음) 4. ----- ----- ----- ----- ----- <u>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u> ----- <u>부담액</u> <u>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u> -----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p>	<p>"오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합류식 관 거지역에 서 이중부 담 방지 조문정리</p>

[별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동반)				
	관종	PVC관, PE관, 흠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환경부 고시 제97-85('97.9.18)호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하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보완사항	검사일자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저하수침투여부·공중하수도·타배수설비 제손여부, 제온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관련 감사 지적내용 및 개선사항

지적사항	개선조치	비고
○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 합류식 관거지역에서 건축허가 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후 단독정화조만 설치토록 하고,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구 수성구 전주 덕진구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비용 산정이 어려워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비용은 현장여건등을 감안한 실제 설치비용을 공제하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가자료 등에 의한 비용과 설계·시공업체의 설치비용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부과	
- 건축허가시 “배수설비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서”에 배출수량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출 불가로 미부과	- 건축허가시 “배수설비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서”的 기재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출·부과	
○ 하수발생량 산정을 적게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적게 부과	○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하수발생량 산정에 관하여는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 제17조제3항을 참조하여 조례를 재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수발생량 산정	대구 수성구

지적사항	개선조치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환경부고시 제97-85호(건축물의 용도별오수 발생량산정방법)를 적용하지 않고 1세대당 3·6인을 기준으로 오수량을 산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으로써 실제보다 적게 부과 ○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관거에 대해서는 미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함 -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없이 산정금액의 2/3만 부과 - 하수관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하수발생량 산정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제17조제3항을 참조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고시 제96-4호는 폐지되었으므로 제97-85호를 적용 - 건축허가시 오수정화시설 설치 익산시를 면제하고 단독정화조만 설치토록 조치 - 하수도사용조례를 정비하여 정확 익산시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근거 마련 - 관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전주 익진구축물 또는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전체 하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관거설치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하수유입지점에서 처리장 까지의 관거설치비를 기준으로 산정·부과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사용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를 조속 정비하여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조치 	남원시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1999. 2. 13]
[조례 제17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체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제 4 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5 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 7 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군수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mm 또는 통수단면적 0.7㎡이상), 오수관(안지름 500mm이상)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 및 확장사업비
5. 제3호의 간선관거 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6.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7.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8. 기타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비용

제 8 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양주군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량)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군수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교]의 규정에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점용료) ①군수는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1.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 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량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
된 량
- 2.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
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
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
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
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 3) 공항의 건설사업
 -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
시설지구등)
 -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
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 3. 군수는 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
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
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 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
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

제17면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하여야 함.

가. 오수를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④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조례에서 정한다.

제18조(가산금) ①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제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상하수도 사업소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성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5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2. 13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기준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별표 1〕

하수도 사용요율표 (제12조 제3항 관련)

업종 구분	기본요금 (원)	사용요율	
		사용구분(m^3 /월)	m^3 당단가(원)
가정용		1~10	80
		11~20	90
		21~30	100
		31~40	120
		41~50	140
		51이상	170
업무용		1~20	130
		21~50	150
		51~100	170
		101~300	190
		301이상	220
영업용		1~30	170
		31~50	200
		51~100	230
		101~500	270
		501이상	310
욕탕용	1종	1~500	120
		501~700	140
		701~1,000	160
		1,001이상	180
욕탕용	2종	1~200	190
		201~300	220
		301~500	250
		501이상	300
산업용		1 m^3 당	130

-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별표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찬·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업 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포함) • 학교 •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군수가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업 종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 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살장, 정육업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천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폐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괴형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업 종	구 분 내 용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준 건축물 멀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욕탕용	1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체 제비업체 	

-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수, 지하수 및 기타 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별표 2〕

수질 하수도 사용료 (제12조 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펜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 BOD 또는 COD 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ℓ) × 시간당 폐수 배출량(m^3)] × $\frac{1}{1,000}$ × kg 단가 × 1일 조업시간 × 30일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별표 3]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 (제16조 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별표 4〕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 (제17조 제2항 관련)

□ 원인자 부담금 = 하수종말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 하수종말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 하수종말 처리시설 총사업비 ×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종말 처리시설 용량(m}^3/\text{일)}} \times \alpha$$

※ 총 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m}^3/\text{일)}} \times \alpha$$

※ 총 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lpha :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연평균 도매물가 상승율}}{100})$$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 이후 경과년수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하수오염저감기술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99. 2. 8. 법률 제586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배수설비준공검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요율표를 변경하며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군수는 동 설치자의 신고사항과 설치구조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검사토록 함(안 제4조의2)
- 나.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요율표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 다. 하수배출량의 조사에 있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안 제14조제4항)
- 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에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토록 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7조제2항제4호)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하수도법 제24조제2항, 제3항 및 제32조제4항
-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2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 기타 참고사항

-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내용 통보」 공문(경기도 상하67712-1944)
- 현행조례(전문)